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 안건 요약본 -

[제1호]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제2호]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제3호]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

[제4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2025. 3. 5.



법무부

□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에 따라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필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

❖ 비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 정책목표

- ①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②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③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④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⑤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추진 경과

- '24. 7. 31. '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출 요청(중앙부처·지자체)
- '24. 11월~12월 '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취합 및 정리
- ※ (법무부) 7월말까지 「시행계획 작성지침」 정부부처·지자체 송부→ (정부부처·지자체) 10월 말까지 법무부 제출 필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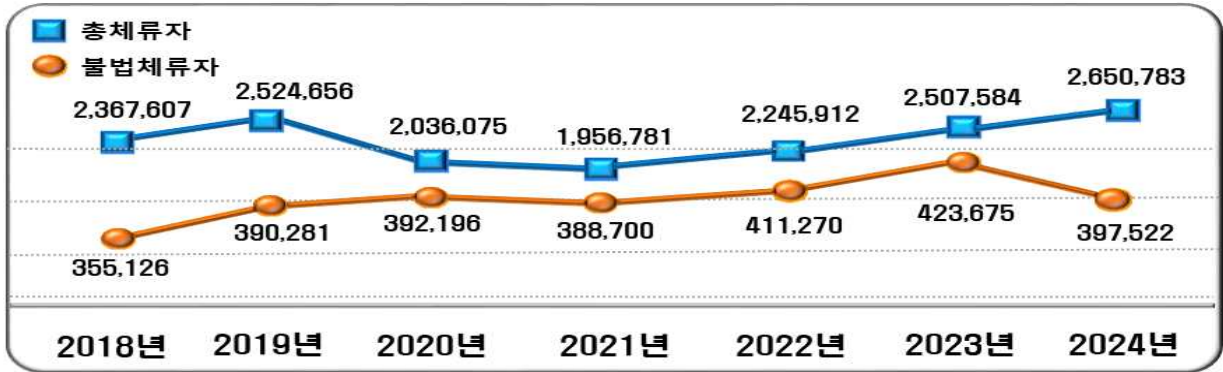
- (21개 중앙행정기관) 14부·1위원회·6청
 ※ 19개 위원부처 중 기재부, 국조실은 과제 없으며, 비위원부처인 해경청, 국세청, 질병청, 재외동포청은 추진과제 있음
- (17개 광역지자체) 1특별시·1특별자치시·6광역시·3특별자치도·6도

□ 정책목표별 주요 과제

- (경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례화, 첨단분야 인재 「탑티어 비자」 신설, 「청년드림비자」 신설, 국내 체류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시범운영 지원,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지역특화비자 대상지역 확대(인구감소 관심지역 18개), 계절근로 통합 관리플랫폼 구축,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 확대(교육부),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확대(문체부) 등

- **(안전)** 불법체류 감축 활동 지속(정부합동단속, 자진출국기간 운영), 전자입국 신고서 도입,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외국인 부동산거래 조사 강화(국토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경찰청), 불법고용 등 고용주 제도 강화(고용부) 등

<단속강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감 추이>



- **(통합)**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동포 체류자격 통합 추진,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다누리 배움터'를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여가부), 문화다양성 정책 지속 추진(문체부), 이민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화(고용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진로상담 등 지원(여가부·교육부),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초·중등) 지정 및 컨설팅 추진(교육부) 등
- **(인권)**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도입 및 중립적 보호위원회 신설, 난민의 국내 정착 현황조사를 통한 정책개발,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외국인고용 사업장 근로기준법·산업안전관계법 지도·점검(고용부), 폭력피해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여가부) 등
- **(협력/인프라)** 중앙·지방 협력강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법제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간 협력 강화 및 통합운영 지속 추진(법무·고용·여가부), ODA 사업(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 시행(법무부·KOICA) 등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 **(과제)** 총 1,504개(중앙 157개+지자체 1,347개)
- **(예산)** 총 6,961억(중앙 3,662억+지자체 3,299억)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1.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대상 Top-Tier 비자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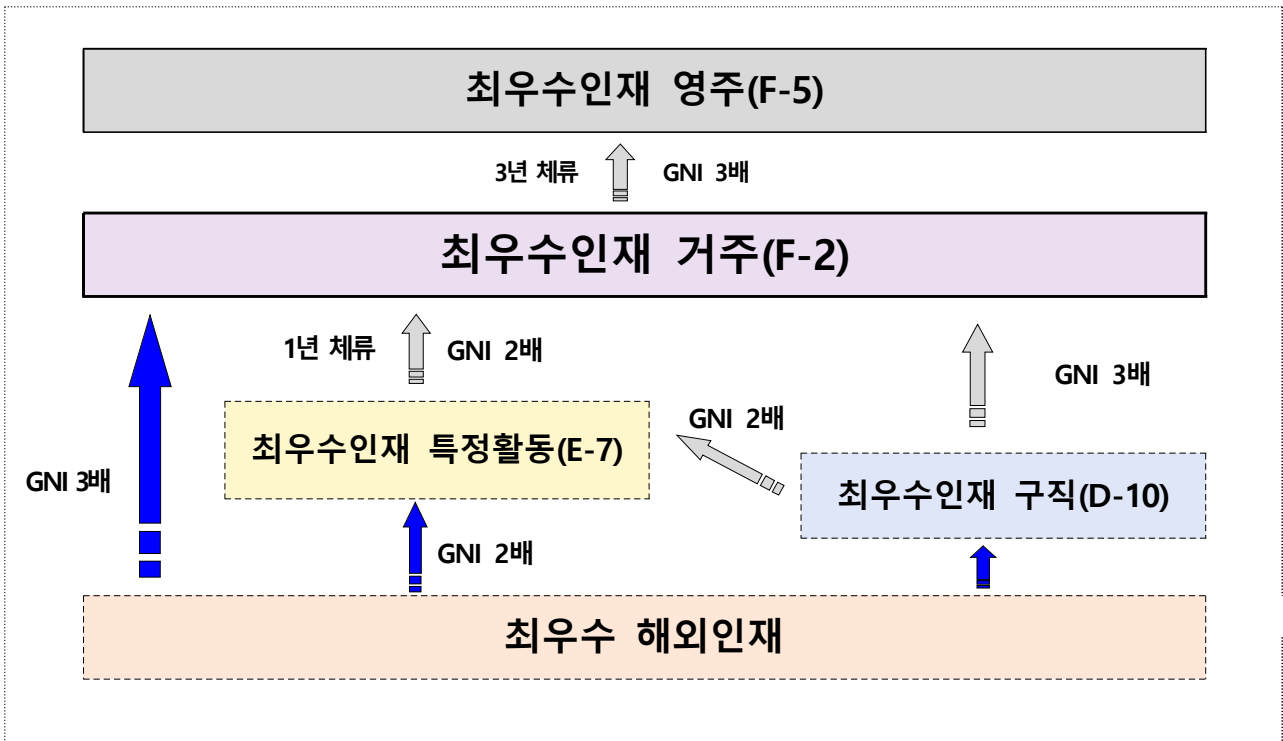
- (추진 배경)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유치 촉진을 위한 혁신적인 비자 발급 편의 및 체류혜택 제공 필요
- (주요 내용)
 - ①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학술, 연구, 산업, 창업 등)가 취·창업한 경우,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향후 영주권까지 취득 지원
 - * (요건)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 일정 소득 이상 등
 - (혜택) 전자비자 신속 발급, 부모·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K-Tech Pass*와 연계한 정착지원 등 차별화된 혜택 제공

【*산업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K-Tech Pass)】

- (지원대상)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첨단인재법)」의 첨단산업 종사 우수 해외인재
 - * 첨단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로봇·방위산업(‘25.上 추가)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미래모빌리티 등 추가 예정 (산업부 고시 개정)
 - ▶ 첨단인재법의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발급자) ⇔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 대상자
 - *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신설 예정(3월)
- (지원사항)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 발급 및 각종 정주지원
 - ▶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 (교육)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의 입학 허용
 - ▶ (주거)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현행 2억원 → 개정 5억원)
 - ▶ (정착) 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 ②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T)’ 비자로 2년간 자유로운 취업탐색·준비활동 보장
- (향후 계획) '25. 1분기 탐티어 비자발급 지침 마련 및 시행

< 탐티어 비자 체류자격 체계도 >



2. 글로벌 청년인재 교류를 위한 **청년드림비자** 신설

- (추진 배경)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주요 경제협력국 중 시범 실시 대상 국가의 청년에게 「가칭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발급하여 지한(知韓)그룹 양성
 - * 문화체험, 어학연수, 취업활동 등 가능
- (운영 방안) **법무부** 시범 지자체 공모(25. 2분기) → **지자체** 연수 프로그램 설계(25. 2분기) → **법무부** 비자발급 및 입국(25. 하반기)
 -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국가 출신의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 (활용 방안) 청년드림비자 활동 종료 후 ①인턴십 기업 정규취업을 통한 국내 정착 또는 ②본국 귀환을 통해 양국 상생 발전에 기여

② 현장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설계

1. 지자체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광역비자** 시범운영

- (추진 배경) 이민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입단계부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이민자 도입 필요
- (주요 내용) 유학(D-2),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으로 법무부가 광역비자 요건 등 설정 ⇒ 광역지자체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마련 ⇒ 심의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차관)에서 최종 결정
 -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광역비자 시행 여부를 정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정식 운영 여부 결정
- (향후 계획) '25. 2월~3월 대상 지자체 선정 → '25. 3월 시범운영 개시 → '25. 상반기 광역비자 정식사업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2. 경제계·지자체 수요 반영을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시행

- (추진 배경) 경제계·지자체 등 이해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맞춤형 도입 등을 위한 수요자 기반의 유연한 비자 발급 프로세스 구축
- (주요 내용) ^{1단계} 경제·산업계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 비자·체류정책 수요 제기, 소관부처 및 지자체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 ⇒ ^{2단계} 법무부 자체 민관심의기구*에서 심사** ⇒ ^{3단계} 법무부가 비자·체류정책 제도개선 여부 최종 결정
 - * 가칭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로,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과 경제분야 등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 ** 국가 장기계획,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국민고용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
- (향후 계획) '25. 3월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 '25. 7월 반기 1회 협의회 정례 개최
 - *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해수부), 자동차 판금·도장 정비원(국토부) 등 우선 안건으로 검토 예정

1. 추진 배경

- 외국인이 증가하고 계절근로자·이주배경학생 등 체류 유형도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통합교육 개선 필요

2. 정책 환경 및 문제점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발생, 외국인 산재 피해 증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를 반영한 체계적 교육 부족
-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통된 내용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원화된 체류 유형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 4세대 이후(1945.8.15. 이전 출생자를 1세대로 정의) 동포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정체성 약화 등을 고려한 동포 맞춤형 교육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 (인권보호·범죄예방) ①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인권보호 등 교육) 이수 인센티브 도입 및 이수 의무화 시행, ②조기적응프로그램 내 산업 안전·범죄예방 교육과정 신설
-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입국 前 외국인, 이주배경학생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입국 前) 현지 정착지원 설명회 개최, 영상교육자료 제작·온라인 배포,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현지 운영 등 추진
 - (이주배경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에 찾아가서 이주배경학생에게 조기적응·진로진학 등 교육 실시
 -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 연계 과정'을 활성화하여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E-7, F-4) 비자 취득 대상자가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및 산업현장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편성·운영
- (동포 대상 사회통합 강화) 동포 체류자격(H-2, F-4)을 통합하고, 우수 청년 동포 유입 촉진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체류·국적 상담 등을 포함한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추진

1. 검토 배경

- (배경)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문 돌봄인력 공급 저변을 확대하여 국민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① '28년 기준 요양보호사 약 11.6만 명 부족 예상(수요의 15% 수준), ② 전체 요양보호사 근무자 중 외국인 비중은 약 0.9%에 불과
 - *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 ('25) -3,762 (명) → ('26) -43,447 → ('27) -79,020 → ('28) -116,734
 - ** (외국인 근무자) 전체 근무자 646천 명 中 5.6천 명(0.9%)

2. 추진 방향

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시범 운영

- (추진방향)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돌봄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신설
 - (현지선발·국내연수) 국가자격·전공·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후보생 선발* →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이수
 - * 돌봄분야(사회복지·간호 등)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소지자 우대, 법무부와 복지부가 협업하여 돌봄 관련 우수 소양을 갖춘 인원 선발·평가 기준 마련
 - (실습·취업) 우수기관 연계 현장실습 및 자격 취득 → 취업 및 정착

②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학위과정」 신설

- (추진 방향) 광역지자체-대학 협업 체계를 통해 유치·교육 등 유학생 요양보호사 학위과정부터 취업·정착까지 쉼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 (법무부) 운영지침(훈령) 수립 등 제도 기반 및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 비자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성과정 운영 지원
 - (복지부) 양성대학 선정 기준 수립, 교육과정 설계, 양성과정 관리 등
 - (지자체-대학)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 자격 취득 지원, 취업 연계 등 책임성 있는 양성과정 운영

3. 추진 일정

- ('25. 하반기) 요양보호사 전문연수생 선발
- ('25. 하반기)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